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0

발의연월일 : 2024. 11. 21.

발 의 자:민형배·김원이·이정문

윤준병 • 양부남 • 이수진

정준호 • 전진숙 • 조계원

김문수 • 이용선 • 조인철

이훈기 • 박균택 • 정진욱

안도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 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피해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지정·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제5조(보상금) ①
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	
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	
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
	거나 공소기각 • 유죄판결 • 면
	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
	은 사람: 피해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u>정한 금액</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와 결정) (생 략)	제9조(심의와 결정)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
	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통
	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
	<u>계청장이 매년 지정·고시하는</u>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
	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

	<u>으로 한다.</u>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
	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